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5

발의연월일: 2021. 7. 30.

발 의 자:임종성・김정호・김윤덕

소병훈・김주영・윤준병

송갑석 • 기동민 • 이원욱

유후덕 · 서영석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해당시설물의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설물을 운영 관리중인 이거나 설계, 시공, 감리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80조제2항제3호 신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 및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와 그 계열회사인 경우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 및 조사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 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 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 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 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 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하 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 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신 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 · 관리 업 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인 경우

<신 설>

- ② ~ ⑤ (생 략)
- 제8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③ ~ ⑥ (생 략)

-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 진단 및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그 계열회사인 경우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 행한 자
 - ③ ~ ⑥ (현행과 같음)